**「공직선거법」**

**□ 개 요**

일본의 공직선거법 법률 제100호는 1950년 제정되었다. 중의원의원선거법·참의원의원선거법의 각 조문, 지방자치법의 선거에 관한 조문을 통합하는 형태로 제정되었다. 공직(국회의원, 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 등)에 관한 정수와 선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총 17장 275조로 구성되어 있다.

**□ 목 차**

|  |  |
| --- | --- |
| **원문** | **번역문** |
| **第一章 総則**第一条　この法律の目的第二条　この法律の適用範囲第三条　公職の定義第四条　議員の定数第五条　選挙事務の管理第五条の二　中央選挙管理会第五条の三　中央選挙管理会の技術的な助言及び勧告並びに資料の提出の要求第五条の四　中央選挙管理会の是正の指示第五条の五　中央選挙管理会の処理基準第五条の六　参議院合同選挙区選挙管理委員会第五条の七　参議院合同選挙区選挙管理委員会の技術的な助言及び勧告並びに資料の提出の要求第五条の八　参議院合同選挙区選挙管理委員会の是正の指示第五条の九　参議院合同選挙区選挙管理委員会の処理基準第五条の十　合同選挙区都道府県の選挙管理委員会の委員の失職の特例第六条　選挙に関する啓発、周知等第七条　選挙取締の公正確保第八条　特定地域に関する特例**第二章 選挙権及び被選挙権**第九条　選挙権第十条　被選挙権第十一条　選挙権及び被選挙権を有しない者第十一条の二　被選挙権を有しない者**第三章 選挙に関する区域**第十二条　選挙の単位第十三条　衆議院議員の選挙区第十四条　参議院選挙区選出議員の選挙区第十五条　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の選挙区第十五条の二　選挙区の選挙期間中の特例第十六条　選挙区の異動と現任者の地位第十七条　投票区第十八条　開票区**第四章 選挙人名簿**第十九条　永久選挙人名簿第二十条　選挙人名簿の記載事項等第二十一条　被登録資格等第二十二条　登録第二十三条　削除第二十四条　異議の申出第二十五条　訴訟第二十六条　補正登録第二十七条　表示及び訂正等第二十八条　登録の抹消第二十八条の二　登録の確認及び政治活動を目的とした選挙人名簿の抄本の閲覧第二十八条の三　政治又は選挙に関する調査研究を目的とした選挙人名簿の抄本の閲覧第二十八条の四　選挙人名簿の抄本の閲覧に係る勧告及び命令等第二十九条　通報及び調査の請求第三十条　選挙人名簿の再調製**第四章の二 在外選挙人名簿**第三十条の二　在外選挙人名簿第三十条の三　在外選挙人名簿の記載事項等第三十条の四　在外選挙人名簿の被登録資格等第三十条の五　在外選挙人名簿の登録の申請等第三十条の六　在外選挙人名簿の登録等第三十条の七　削除第三十条の八　在外選挙人名簿の登録等に関する異議の申出第三十条の九　在外選挙人名簿の登録等に関する訴訟第三十条の十　在外選挙人名簿の表示及び訂正等第三十条の十一　在外選挙人名簿の登録の抹消第三十条の十二　在外選挙人名簿の抄本の閲覧等第三十条の十三　在外選挙人名簿の修正等に関する通知等第三十条の十四　在外選挙人証交付記録簿の閲覧第三十条の十五　在外選挙人名簿の再調製第三十条の十六　在外選挙人名簿の登録等に関する政令への委任**第五章 選挙期日**第三十一条　総選挙第三十二条　通常選挙第三十三条　一般選挙、長の任期満了に因る選挙及び設置選挙第三十三条の二　衆議院議員及び参議院議員の再選挙及び補欠選挙第三十四条　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再選挙、補欠選挙等第三十四条の二　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任期満了による選挙の期日の特例**第六章 投票**第三十五条　選挙の方法第三十六条　一人一票第三十七条　投票管理者第三十八条　投票立会人第三十九条　投票所第四十条　投票所の開閉時間第四十一条　投票所の告示第四十一条の二　共通投票所第四十二条　選挙人名簿又は在外選挙人名簿の登録と投票第四十三条　選挙権のない者の投票第四十四条　投票所における投票第四十五条　投票用紙の交付及び様式第四十六条　投票の記載事項及び投函第四十六条の二　記号式投票第四十七条　点字投票第四十八条　代理投票第四十八条の二　期日前投票第四十九条　不在者投票第四十九条の二　在外投票等第五十条　選挙人の確認及び投票の拒否第五十一条　退出せしめられた者の投票第五十二条　投票の秘密保持第五十三条　投票箱の閉鎖第五十四条　投票録の作成第五十五条　投票箱等の送致第五十六条　繰上投票第五十七条　繰延投票第五十八条　投票所に出入し得る者第五十九条　投票所の秩序保持のための処分の請求第六十条　投票所における秩序保持**第七章 開票**第六十一条　開票管理者第六十二条　開票立会人第六十三条　開票所の設置第六十四条　開票の場所及び日時の告示第六十五条　開票日第六十六条　開票第六十七条　開票の場合の投票の効力の決定第六十八条　無効投票第六十八条の二　同一氏名の候補者等に対する投票の効力第六十八条の三　特定の参議院名簿登載者の有効投票第六十九条　開票の参観第七十条　開票録の作成第七十一条　投票、投票録及び開票録の保存第七十二条　一部無効に因る再選挙の開票第七十三条　繰延開票第七十四条　開票所の取締り**第八章 選挙会及び選挙分会**第七十五条　選挙長及び選挙分会長第七十六条　選挙立会人第七十七条　選挙会及び選挙分会の開催場所第七十八条　選挙会及び選挙分会の場所及び日時第七十九条　開票事務と選挙会事務との合同第八十条　選挙会又は選挙分会の開催第八十一条　衆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若しくは参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の選挙又は参議院合同選挙区選挙の選挙会の開催第八十二条　選挙会及び選挙分会の参観第八十三条　選挙録の作成及び選挙録その他関係書類の保存第八十四条　繰延選挙会又は繰延選挙分会第八十五条　選挙会場及び選挙分会場の取締り**第九章 公職の候補者**第八十六条　衆議院小選挙区選出議員の選挙における候補者の立候補の届出等第八十六条の二　衆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の選挙における名簿による立候補の届出等第八十六条の三　参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の選挙における名簿による立候補の届出等第八十六条の四　衆議院議員又は参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の選挙以外の選挙における候補者の立候補の届出等第八十六条の五　候補者の選定の手続の届出等第八十六条の六　衆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の選挙における政党その他の政治団体の名称の届出等第八十六条の七　参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の選挙における政党その他の政治団体の名称の届出等第八十六条の八　被選挙権のない者等の立候補の禁止第八十七条　重複立候補等の禁止第八十七条の二　衆議院小選挙区選出議員又は参議院選挙区選出議員たることを辞した者等の立候補制限第八十八条　選挙事務関係者の立候補制限第八十九条　公務員の立候補制限第九十条　立候補のための公務員の退職第九十一条　公務員となつた候補者の取扱い第九十二条　供託第九十三条　公職の候補者に係る供託物の没収第九十四条　名簿届出政党等に係る供託物の没収**第十章 当選人**第九十五条　衆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又は参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の選挙以外の選挙における当選人第九十五条の二　衆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の選挙における当選人の数及び当選人第九十五条の三　参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の選挙における当選人の数及び当選人となるべき順位並びに当選人第九十六条　当選人の更正決定第九十七条　衆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又は参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の選挙以外の選挙における当選人の繰上補充第九十七条の二　衆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又は参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の選挙における当選人の繰上補充第九十八条　被選挙権の喪失と当選人の決定等第九十九条　被選挙権の喪失に因る当選人の失格第九十九条の二　衆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又は参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の選挙における所属政党等の移動による当選人の失格第百条　無投票当選第百一条　衆議院小選挙区選出議員の選挙における当選人決定の場合の報告、告知及び告示第百一条の二　衆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の選挙における当選人の数及び当選人の決定の場合の報告、告知及び告示第百一条の二の二　参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の選挙における当選人の数及び当選人となるべき順位並びに当選人の決定の場合の報告、告知及び告示第百一条の三　衆議院議員又は参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の選挙以外の選挙における当選人決定の場合の報告、告知及び告示第百二条　当選等の効力の発生第百三条　当選人が兼職禁止の職にある場合等の特例第百四条　請負等をやめない場合の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又は長の当選人の失格第百五条　当選証書の付与第百六条　当選人がない場合等の報告及び告示第百七条　選挙及び当選の無効の場合の告示第百八条　当選等に関する報告**第十一章 特別選挙**第百九条　衆議院小選挙区選出議員、参議院選挙区選出議員又は地方公共団体の長の再選挙第百十条　衆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参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又は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の再選挙第百十一条　議員又は長の欠けた場合等の通知第百十二条　議員又は長の欠けた場合等の繰上補充第百十三条　補欠選挙及び増員選挙第百十四条　長が欠けた場合及び退職の申立てがあつた場合の選挙第百十五条　合併選挙及び在任期間を異にする議員の選挙の場合の当選人第百十六条　議員又は当選人がすべてない場合の一般選挙第百十七条　設置選挙第百十八条　削除**第十二章 選挙を同時に行うための特例**第百十九条　同時に行う選挙の範囲第百二十条　選挙を同時に行うかどうかの決定手続第百二十一条　選挙の同時施行決定までの市町村の選挙の施行停止第百二十二条　投票及び開票の順序第百二十三条　投票、開票及び選挙会に関する規定の適用第百二十四条　繰上投票第百二十五条　繰延投票第百二十六条　長の候補者が一人となつた場合の選挙期日の延期第百二十七条　無投票当選第百二十八条　削除**第十三章 選挙運動**第百二十九条　選挙運動の期間第百三十条　選挙事務所の設置及び届出第百三十一条　選挙事務所の数第百三十二条　選挙当日の選挙事務所の制限第百三十三条　休憩所等の禁止第百三十四条　選挙事務所の閉鎖命令第百三十五条　選挙事務関係者の選挙運動の禁止第百三十六条　特定公務員の選挙運動の禁止第百三十六条の二　公務員等の地位利用による選挙運動の禁止第百三十七条　教育者の地位利用の選挙運動の禁止第百三十七条の二　年齢満十八年未満の者の選挙運動の禁止第百三十七条の三　選挙権及び被選挙権を有しない者の選挙運動の禁止第百三十八条　戸別訪問第百三十八条の二　署名運動の禁止第百三十八条の三　人気投票の公表の禁止第百三十九条　飲食物の提供の禁止第百四十条　気勢を張る行為の禁止第百四十条の二　連呼行為の禁止第百四十一条　自動車、船舶及び拡声機の使用第百四十一条の二　自動車等の乗車制限第百四十一条の三　車上の選挙運動の禁止第百四十二条　文書図画の頒布第百四十二条の二　パンフレット又は書籍の頒布第百四十二条の三　ウェブサイト等を利用する方法による文書図画の頒布第百四十二条の四　電子メールを利用する方法による文書図画の頒布第百四十二条の五　インターネット等を利用する方法により当選を得させないための活動に使用する文書図画を頒布する者の表示義務第百四十二条の六　インターネット等を利用する方法による候補者の氏名等を表示した有料広告の禁止等第百四十二条の七　選挙に関するインターネット等の適正な利用第百四十三条　文書図画の掲示第百四十三条の二　文書図画の撤去義務第百四十四条　ポスターの数第百四十四条の二　ポスター掲示場第百四十四条の三　ポスター掲示場を設置しない場合第百四十四条の四　任意制ポスター掲示場第百四十四条の五　ポスター掲示場の設置についての協力第百四十五条　ポスターの掲示箇所等第百四十六条　文書図画の頒布又は掲示につき禁止を免れる行為の制限第百四十七条　文書図画の撤去第百四十七条の二　あいさつ状の禁止第百四十八条　新聞紙、雑誌の報道及び評論等の自由第百四十八条の二　新聞紙、雑誌の不法利用等の制限第百四十九条　新聞広告第百五十条　政見放送第百五十条の二　政見放送における品位の保持第百五十一条　経歴放送第百五十一条の二　政見放送及び経歴放送を中止する場合第百五十一条の三　選挙放送の番組編集の自由第百五十一条の四　削除第百五十一条の五　選挙運動放送の制限第百五十二条　挨拶を目的とする有料広告の禁止第百五十三条~第百六十条　 削除第百六十一条　公営施設使用の個人演説会等第百六十一条の二　公営施設以外の施設使用の個人演説会等第百六十二条　個人演説会等における演説第百六十三条　個人演説会等の開催の申出第百六十四条　個人演説会の施設の無料使用第百六十四条の二　個人演説会等の会場の掲示の特例第百六十四条の三　他の演説会の禁止第百六十四条の四　個人演説会等及び街頭演説における録音盤の使用第百六十四条の五　街頭演説第百六十四条の六　夜間の街頭演説の禁止等第百六十四条の七　街頭演説の場合の選挙運動員等の制限第百六十五条　削除第百六十五条の二　近接する選挙の場合の演説会等の制限第百六十六条　特定の建物及び施設における演説等の禁止第百六十七条　選挙公報の発行第百六十八条　掲載文の申請第百六十九条　選挙公報の発行手続第百七十条　選挙公報の配布第百七十一条　選挙公報の発行を中止する場合第百七十二条　選挙公報に関しその他必要な事項第百七十二条の二　任意制選挙公報の発行第百七十三条　削除第百七十四条　削除第百七十五条　投票記載所の氏名等の掲示第百七十六条　交通機関の利用第百七十七条　通常葉書等の返還及び譲渡禁止第百七十八条　選挙期日後の挨拶行為の制限第百七十八条の二　選挙期日後の文書図画の撤去第百七十八条の三　衆議院議員又は参議院議員の選挙における選挙運動の態様**第十四章 選挙運動に関する収入及び支出並びに寄附**第百七十九条　収入、寄附及び支出の定義第百七十九条の二　適用除外第百八十条　出納責任者の選任及び届出第百八十一条　出納責任者の解任及び辞任第百八十二条　出納責任者の異動第百八十三条　出納責任者の職務代行第百八十三条の二　出納責任者の届出の効力第百八十四条　届出前の寄附の受領及び支出の禁止第百八十五条　会計帳簿の備付及び記載第百八十六条　明細書の提出第百八十七条　出納責任者の支出権限第百八十八条　領収書等の徴収及び送付第百八十九条　選挙運動に関する収入及び支出の報告書の提出第百九十条　出納責任者の事務引継第百九十一条　帳簿及び書類の保存第百九十二条　報告書の公表、保存及び閲覧第百九十三条　報告書の調査に関する資料の要求第百九十四条　選挙運動に関する支出金額の制限第百九十五条　選挙の一部無効及び選挙の期日等の延期の場合の選挙運動に関する支出金額の制限第百九十六条　選挙運動に関する支出金額の制限額の告示第百九十七条　選挙運動に関する支出とみなされないものの範囲第百九十七条の二　実費弁償及び報酬の額第百九十八条　削除第百九十九条　特定の寄附の禁止第百九十九条の二　公職の候補者等の寄附の禁止第百九十九条の三　公職の候補者等の関係会社等の寄附の禁止第百九十九条の四　公職の候補者等の氏名等を冠した団体の寄附の禁止第百九十九条の五　後援団体に関する寄附等の禁止第二百条　特定人に対する寄附の勧誘、要求等の禁止第二百一条　削除**第十四章の二 参議院選挙区選出議員の選挙の特例**第二百一条の二　特例の範囲第二百一条の三　削除第二百一条の四　推薦団体の選挙運動の特例**第十四章の三 政党その他の政治団体等の選挙における政治活動**第二百一条の五　総選挙における政治活動の規制第二百一条の六　通常選挙における政治活動の規制第二百一条の七　衆議院議員又は参議院議員の再選挙又は補欠選挙の場合の規制第二百一条の八　都道府県又は指定都市の議会の議員の選挙における政治活動の規制第二百一条の九　都道府県知事又は市長の選挙における政治活動の規制第二百一条の十　二以上の選挙が行われる場合の政治活動第二百一条の十一　政治活動の態様第二百一条の十二　政談演説会等の制限第二百一条の十三　連呼行為等の禁止第二百一条の十四　選挙運動の期間前に掲示されたポスターの撤去第二百一条の十五　政党その他の政治団体の機関紙誌**第十五章 争訟**第二百二条　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の効力に関する異議の申出及び審査の申立て第二百三条　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の効力に関する訴訟第二百四条　衆議院議員又は参議院議員の選挙の効力に関する訴訟第二百五条　選挙の無効の決定、裁決又は判決第二百六条　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又は長の当選の効力に関する異議の申出及び審査の申立て第二百七条　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当選の効力に関する訴訟第二百八条　衆議院議員又は参議院議員の当選の効力に関する訴訟第二百九条　当選の効力に関する争訟における選挙の無効の決定、裁決又は判決第二百九条の二　当選の効力に関する争訟における潜在無効投票第二百十条　総括主宰者、出納責任者等の選挙犯罪による公職の候補者であつた者の当選の効力及び立候補の資格に関する訴訟等第二百十一条　総括主宰者、出納責任者等の選挙犯罪による公職の候補者等であつた者の当選無効及び立候補の禁止の訴訟第二百十二条　選挙人等の出頭及び証言の請求第二百十三条　争訟の処理第二百十四条　争訟の提起と処分の執行第二百十五条　決定書、裁決書の交付及びその要旨の告示第二百十六条　行政不服審査法の準用第二百十七条　訴訟の管轄第二百十八条　選挙関係訴訟における検察官の立会第二百十九条　選挙関係訴訟に対する訴訟法規の適用第二百二十条　選挙関係訴訟についての通知及び判決書謄本の送付**第十六章 罰則**第二百二十一条　買収及び利害誘導罪第二百二十二条　多数人買収及び多数人利害誘導罪第二百二十三条　公職の候補者及び当選人に対する買収及び利害誘導罪第二百二十三条の二　新聞紙、雑誌の不法利用罪第二百二十四条　買収及び利害誘導罪の場合の没収第二百二十四条の二　おとり罪第二百二十四条の三　候補者の選定に関する罪第二百二十五条　選挙の自由妨害罪第二百二十六条　職権濫用による選挙の自由妨害罪第二百二十七条　投票の秘密侵害罪第二百二十八条　投票干渉罪第二百二十九条　選挙事務関係者、施設等に対する暴行罪、騒擾罪等第二百三十条　多衆の選挙妨害罪第二百三十一条　凶器携帯罪第二百三十二条　投票所、開票所、選挙会場等における凶器携帯罪第二百三十三条　携帯兇器の没収第二百三十四条　選挙犯罪の煽動罪第二百三十五条　虚偽事項の公表罪第二百三十五条の二　新聞紙、雑誌が選挙の公正を害する罪第二百三十五条の三　政見放送又は選挙公報の不法利用罪第二百三十五条の四　選挙放送等の制限違反第二百三十五条の五　氏名等の虚偽表示罪第二百三十五条の六　あいさつを目的とする有料広告の制限違反第二百三十六条　詐偽登録、虚偽宣言罪等第二百三十六条の二　選挙人名簿の抄本等の閲覧に係る命令違反及び報告義務違反第二百三十七条　詐偽投票及び投票偽造、増減罪第二百三十七条の二　代理投票等における記載義務違反第二百三十八条　立会人の義務を怠る罪第二百三十八条の二　立候補に関する虚偽宣誓罪第二百三十九条　事前運動、教育者の地位利用、戸別訪問等の制限違反第二百三十九条の二　公務員等の選挙運動等の制限違反第二百四十条　選挙事務所、休憩所等の制限違反第二百四十一条　選挙事務所設置違反、特定公務員等の選挙運動の禁止違反第二百四十二条　選挙事務所の設置届出及び表示違反第二百四十二条の二　人気投票の公表の禁止違反第二百四十三条　選挙運動に関する各種制限違反、その一第二百四十四条　選挙運動に関する各種制限違反、その二第二百四十五条　選挙期日後のあいさつ行為の制限違反第二百四十六条　選挙運動に関する収入及び支出の規制違反第二百四十七条　選挙費用の法定額違反第二百四十八条　寄附の制限違反第二百四十九条　寄附の勧誘、要求等の制限違反第二百四十九条の二　公職の候補者等の寄附の制限違反第二百四十九条の三　公職の候補者等の関係会社等の寄附の制限違反第二百四十九条の四　公職の候補者等の氏名等を冠した団体の寄附の制限違反第二百四十九条の五　後援団体に関する寄附等の制限違反第二百五十条　懲役又は禁錮及び罰金の併科、重過失の処罰第二百五十一条　当選人の選挙犯罪による当選無効第二百五十一条の二　総括主宰者、出納責任者等の選挙犯罪による公職の候補者等であつた者の当選無効及び立候補の禁止第二百五十一条の三　組織的選挙運動管理者等の選挙犯罪による公職の候補者等であつた者の当選無効及び立候補の禁止第二百五十一条の四　公務員等の選挙犯罪による当選無効第二百五十一条の五　当選無効及び立候補の禁止の効果の生ずる時期第二百五十二条　選挙犯罪による処刑者に対する選挙権及び被選挙権の停止第二百五十二条の二　推薦団体の選挙運動の規制違反第二百五十二条の三　政党その他の政治活動を行う団体の政治活動の規制違反第二百五十三条　選挙人等の偽証罪第二百五十三条の二　刑事事件の処理第二百五十四条　当選人等の処刑の通知第二百五十四条の二　総括主宰者、出納責任者等の処刑の通知第二百五十五条　不在者投票の場合の罰則の適用第二百五十五条の二　在外投票の場合の罰則の適用第二百五十五条の三　国外犯第二百五十五条の四　偽りその他不正の手段による選挙人名簿の抄本等の閲覧等に対する過料**第十七章 補則**第二百五十六条　衆議院議員の任期の起算第二百五十七条　参議院議員の任期の起算第二百五十八条　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の任期の起算第二百五十九条　地方公共団体の長の任期の起算第二百五十九条の二　地方公共団体の長の任期の起算の特例第二百六十条　補欠議員の任期第二百六十一条　選挙管理費用の国と地方公共団体との負担区分第二百六十一条の二　選挙に関する常時啓発の費用の財政措置第二百六十二条　各選挙に通ずる選挙管理費用の財政措置第二百六十三条　衆議院議員又は参議院議員の選挙管理費用の国庫負担第二百六十四条　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又は長の選挙管理費用の地方公共団体負担第二百六十四条の二　行政手続法の適用除外第二百六十五条　審査請求の制限第二百六十六条　特別区の特例第二百六十七条　地方公共団体の組合の特例第二百六十八条　財産区の特例第二百六十九条　指定都市の区及び総合区に対するこの法律の適用第二百六十九条の二　選挙に関する期日の国外における取扱い第二百七十条　選挙に関する届出等の時間第二百七十条の二　不在者投票の時間第二百七十条の三　選挙に関する届出等の期限第二百七十一条　都道府県の議会の議員の選挙区の特例第二百七十一条の二　一部無効に因る再選挙の特例第二百七十一条の三　衆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又は参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の再選挙又は補欠選挙の特例第二百七十一条の四　再立候補の場合の特例第二百七十一条の五　在外投票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の取扱い第二百七十一条の六　適用関係第二百七十二条　命令への委任第二百七十三条　選挙事務の委嘱第二百七十四条　選挙人に関する記録の保護第二百七十五条　事務の区分**附　則** | **제1장 총칙**제1조 목적제2조 적용범위제3조 공직의 정의제4조 의원의 정수제5조 선거사무의 관리제5조의2 중앙선거관리회제5조의3 중앙선거관리회의 기술적 조언, 권고 및 자료 제출의 요구제5조의4 중앙선거관리회의 시정 지시제5조의5 중앙선거관리회의 처리기준제5조의6 참의원합동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제5조의7 참의원합동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기술적 조언, 권고 및 자료 제출의 요구제5조의8 참의원합동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정 지시제5조의9 참의원합동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리기준제5조의10 합동선거구 도도부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실직의 특례제6조 선거에 관한 계발, 주지 등제7조 선거단속의 공정성 확보제8조 특정지역에 관한 특례**제2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제9조 선거권제10조 피선거권제11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는 자제11조의2 피선거권이 없는 자**제3장 선거에 관한 구역**제12조 선거의 단위제13조 중의원의원선거구제14조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 선거구제15조 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 선거구제15조의2 선거구의 선거기간 중 특례제16조 선거구의 이동(異動)과 현임자의 지위제17조 투표구제18조 개표구**제4장 선거인명부**제19조 영구선거인명부제20조 선거인명부의 기재사항 등제21조 피등록자격 등제22조 등록제23조 삭제제24조 이의신청제25조 소송제26조 보정등록제27조 표시 및 정정 등제28조 등록의 말소제28조의2 등록의 확인 및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한 선거인명부 초본의 열람제28조의3 정치 또는 선거에 관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한 선거인명부 초본의 열람제28조의4 선거인명부 초본의 열람과 관련된 권고 및 명령 등제29조 통보 및 조사의 청구제30조 선거인명부의 재작성**제4장의 2 재외선거인명부**제30조의2 재외선거인명부제30조의3 재외선거인명부의 기재사항 등제30조의4 재외선거인명부의 피등록자격 등제30조의5 재외선거인명부의 등록 신청 등제30조의6 재외선거인명부의 등록 등제30조의7 삭제제30조의8 재외선거인명부의 등록 등에 관한 이의신청제30조의9 재외선거인명부의 등록 등에 관한 소송제30조의10 재외선거인명부의 표시 및 정정 등제30조의11 재외선거인명부의 등록 말소제30조의12 재외선거인명부 초본의 열람 등제30조의13 재외선거인명부의 수정 등에 관한 통지 등제30조의14 재외선거인증 교부기록부의 열람제30조의15 재외선거인명부의 재작성제30조의16 재외선거인명부의 등록 등에 관한 정령에의 위임**제5장 선거일**제31조 총선거제32조 통상선거제33조 일반선거, 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 및 설치선거제33조의2 중의원의원 및 참의원의원 재선거 및 보궐선거제34조 지방공공단체의회 의원 및 장의 재선거, 보궐선거 등제34조의2 지방공공단체의회 의원 및 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의 특례**제6장 투표**제35조 선거의 방법제36조 1인1표제37조 투표관리자제38조 투표참관인제39조 투표소제40조 투표소의 개폐시간제41조 투표소의 고시제41조의2 공통투표소제42조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의 등록과 투표제43조 선거권이 없는 자의 투표제44조 투표소에서의 투표제45조 투표용지의 교부 및 양식제46조 투표의 기재사항 및 투표함제46조의2 기호식 투표제47조 점자투표제48조 대리투표제48조의2 사전투표제49조 부재자투표제49조의2 재외투표 등제50조 선거인의 확인 및 투표의 거부제51조 퇴거당한 자의 투표제52조 투표의 비밀유지제53조 투표함의 봉쇄제54조 투표록의 작성제55조 투표함 등의 송부제56조 조기 투표제57조 투표의 연기제58조 투표소 출입이 가능한 자제59조 투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한 처분의 청구제60조 투표소의 질서유지**제7장 개표**제61조 개표관리자제62조 개표참관인제63조 개표소의 설치제64조 개표 장소 및 일시의 고시제65조 개표일제66조 개표제67조 개표 시 투표의 효력의 결정제68조 무효투표제68조의2 동일성명인 후보자 등에 대한 투표의 효력제68조의3 특정 참의원명부등재자의 유효투표제69조 개표의 참관제70조 개표록의 작성제71조 투표, 투표록 및 개표록의 보존제72조 일부무효에 따른 재선거 개표제73조 개표의 연기제74조 개표소의 단속**제8장 선거회 및 선거분회**제75조 선거장 및 선거분회장제76조 선거입회인제77조 선거회 및 선거분회의 개최장소제78조 선거회 및 선거분회의 장소 및 일시제79조 개표사무와 선거회사무의 통합제80조 선거회 또는 선거분회의 개최제81조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선거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선거 또는 참의원합동선거구선거의 선거회 개최제82조 선거회 및 선거분회의 참관제83조 선거록의 작성 및 선거록, 그 밖에 관계서류의 보존제84조 연기선거회 또는 연기선거분회제85조 선거회장 및 선거분회장의 단속**제9장 공직후보자**제86조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선거후보자 입후보신청 등제86조의2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명부에 의한 입후보신고 등제86조의3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명부에 의한 입후보신고 등제86조의4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외의 선거의 후보자의 입후보신고 등제86조의5 후보자 선정 절차의 신고 등제86조의6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명칭 신고 등제86조의7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명칭 신고 등제86조의8 피선거권이 없는 자 등의 입후보 금지제87조 중복입후보 등의 금지제87조의2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또는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 자격을 사퇴한 자 등의 입후보 제한제88조 선거사무관계자의 입후보 제한제89조 공무원의 입후보 제한제90조 입후보를 위한 공무원의 퇴직제91조 공무원이 된 후보자의 취급제92조 기탁제93조 공직후보자와 관련된 기탁물의 몰수제94조 명부신고정당 등과 관련된 기탁물의 몰수**제10조 당선인**제95조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선거 외의 선거의 당선인제95조의2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선거의 당선인의 수 및 당선인제95조의3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선거의 당선인의 수 및 당선인 순위 및 당선인제96조 당선인의 경정결정제97조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선거 외의 선거의 당선인의 조기보충제97조의2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의 당선인의 조기보충제98조 피선거권의 상실과 당선인의 결정 등제99조 피선거권의 상실에 따른 당선인의 실격제99조의2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선거의 소속정당 등의 이동에 따른 당선인의 실격제100조 무투표당선제101조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선거의 당선인 결정의 보고, 고지 및 고시제101조의2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선거의 당선인의 수 및 당선인 결정의 보고, 고지 및 고시제101조의2의2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선거의 당선인의 수 및 당선인 순위 및 당선인 결정의 경우의 보고, 고지 및 고시제101조의3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선거 외의 선거의 당선인 결정의 보고, 고지 및 고시제102조 당선 등의 효력의 발생제103조 당선인이 겸직이 금지된 직에 있는 경우 등의 특례제104조 도급 등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지방공공단체의회 의원 또는 장의 당선인 실격제105조 당선증서의 부여제106조 당선인이 없는 경우 등의 보고 및 고시제107조 선거 및 당선 무효의 고시제108조 당선 등에 관한 보고**제11장 특별선거**제109조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장의 재선거제110조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지방공공단체의회 의원의 재선거제111조 의원 또는 장이 결원된 경우 등의 통지제112조 의원 또는 장이 결원된경우 등의 조기보충제113조 보궐선거 및 증원선거제114조 장이 결원된 경우 및 퇴직 신청이 있는 경우의 선거제115조 합병선거 및 재임기간을 달리 하는 의원 선거의 경우의 당선인제116조 의원 또는 당선인 전원이 없는 경우의 일반선거제117조 설치선거제118조 삭제**제12장 동시선거를 위한 특례**제119조 동시선거의 범위제120조 동시선거여부의 결정 절차제121조 동시선거 시행 결정까지 시정촌 선거의 시행 정지제122조 투표 및 개표의 순서제123조 투표, 개표 및 선거회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124조 조기투표제125조 투표의 연기제126조 장의 후보자가 1명이 된 경우의 선거일의 연기제127조 무투표당선제128조 삭제**제13장 선거운동**제129조 선거운동기간제130조 선거사무소의 설치 및 신고제131조 선거사무소의 수제132조 선거당일 선거사무소의 제한제133조 휴게소 등의 금지제134조 선거사무소의 폐쇄명령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의 당선운동금지제136조 특정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제136조의2 공무원 등의 지위이용에 따른 선거운동금지제137조 교육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제137조의2 만18세 미만인 자의 선거운동금지제137조의3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선거운동금지제138조 호별방문제138조의2 서명운동금지제138조의3 여론조사결과의 공표금지제139조 음식물의 제공 금지제140조 행렬 등의 행위 금지제140조의2 연호(連呼)행위의 금지제141조 자동차, 선박 및 확성기의 사용제141조의2 자동차 등의 승차제한제141조의3 차상(車上) 선거운동의 금지제142조 문서·도화의 배부제142조의2 팸플릿 또는 서적의 배부제142조의3 웹사이트 등을 이용하는 방법에 따른 문서·도화의 배부제142조의4 전자메일을 이용하는 방법에 따른 문서·도화의 배부제142조의5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한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활동에 사용하는 문서·도화를 배부하는 자의 표시의무제142조의6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한 후보자의 성명 등을 표시한 유료광고의 금지 등제142조의7 선거에 관한 인터넷 등의 적정한 이용제143조 문서·도화의 게시제143조의2 문서·도화의 철거의무제144조 포스터 수제144조의2 포스터 게시판제144조의3 포스터 게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44조의4 임의제 포스터 게시판제144조의5 포스터 게시판 설치에 대한 협력제145조 포스터 게시장소 등제146조 문서·도화의 배부 또는 게시에 대하여 금지 회피 행위의 제한제147조 문서·도화의 철거제147조의2 인사장의 금지제148조 신문, 잡지 보도 및 평론 등의 자유제148조의2 신문, 잡지의 불법이용 등의 제한제149조 신문광고제150조 후보자 연설방송제150조의2 후보자 연설방송의 품위유지제151조 경력방송제151조의2 후보자 연설방송 및 경력방송을 중지하는 경우제151조의3 선거방송 프로그램 편집의 자유제151조의4 삭제제151조의5 선거운동방송의 제한제152조 인사를 목적으로 하는 유료광고의 금지제153조~제160조 삭제제161조 공영시설을 사용한 개인연설회 등제161조의2 공영시설 외의 시설을 사용한 개인연설회 등제162조 개인연설회 등의 연설제163조 개인연설회 등의 개최 신청제164조 개인연설회의 시설무료사용제164조의2 개인연설회 등의 회장 게시의 특례제164조의3 기타 연설회의 금지제164조의4 개인연설회 등 및 가두연설의 녹음판의 사용제164조의5 가두연설제164조의6 야간 가두연설의 금지 등제164조의7 가두연설의 경우의 선거운동원 등의 제한제165조 삭제제165조의2 근접한 선거의 경우의 연설회 등의 제한제166조 특정 건물 및 시설에서의 연설 등의 금지제167조 선거공보의 발행제168조 게재문의 신청제169조 선거공보의 발행 절차제170조 선거공보의 배부제171조 선거공보의 발행을 중지하는 경우제172조 선거공보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172조의2 임의제 선거공보의 발행제173조 삭제제174조 삭제제175조 투표기재소의 성명 등의 게시제176조 교통기관의 이용제177조 통상엽서 등의 반환 및 양도금지제178조 선거일 후의 인사행위의 제한제178조의2 선거일 후의 문서·도화의 철거제178조의3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 선거에서의 선거운동의 양상**제14장 선거운동에 관한 수입, 지출 및 기부**제179조 수입, 기부 및 지출의 정의제179조의2 적용제외제180조 출납책임자의 선임 및 신고제181조 출납책임자의 해임 및 사임제182조 출납책임자의 이동제183조 출납책임자의 직무대행제183조의2 출납책임자의 신고의 효력제184조 신고 전 기부의 수령 및 지출의 금지제185조 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186조 명세서의 제출제187조 출납책임자의 지출권한제188조 영수증 등의 징수 및 송부제189조 선거운동에 관한 수입 및 지출 보고서의 제출제190조 출납책임자의 사무인계제191조 장부 및 서류의 보존제192조 보고서의 공표, 보존 및 열람제193조 보고서 조사에 관한 자료의 요구제194조 선거운동에 관한 지출금액의 제한제195조 선거의 일부무효 및 선거일 등의 연기의 경우의 선거운동에 관한 지출금액의 제한제196조 선거운동에 관한 지출금액의 제한액의 고시제197조 선거운동에 관한 지출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제197조의2 실비변상 및 보수액제198조 삭제제199조 특정 기부 금지제199조의2 공직후보자 등의 기부 금지제199조의3 공직후보자 등의 관계 회사 등의 기부 금지제199조의4 공직후보자 등의 성명 등을 표시한 단체의 기부 금지제199조의5 후원단체에 관한 기부 등의 금지제200조 특정인에 대한 기부의 권유, 요구 등의 금지제201조 삭제**제14장의2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 선거의 특례**제201조의2 특례의 범위제201조의3 삭제제201조의4 추천단체의 선거운동의 특례**제14장의3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 등의 선거의 정치활동**제201조의5 총선거에서의 정치활동의 규제제201조의6 통상선거에서의 정치활동의 규제제201조의7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의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경우의 규제제201조의8 도도부현 또는 지정도시의회의원 선거에서의 정치활동의 규제제201조의9 도도부현 지사 또는 시장 선거에서의 정치활동의 규제제201조의10 둘 이상의 선거를 하는 경우의 정치활동제201조의11 정치활동의 양상제201조의12 정담연설회 등의 제한제201조의13 연호행위 등의 금지제201조의14 선거운동 기간 전에 게시된 포스터의 철거제201조의 15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기관신문**제15장 쟁송**제202조 지방공공단체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신청제203조 지방공공단체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제204조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제205조 선거 무효 결정, 재결 또는 판결제206조 지방공공단체의회 의원 또는 장의 당선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신청제207조 지방공공단체의회 의원 및 장의 당선 효력에 관한 소송제208조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의 당선 효력에 관한 소송제209조 당선 효력에 관한 쟁송의 당선 무효 결정, 재결 또는 판결제209조의2 당선 효력에 관한 쟁송에서의 잠재무효투표제210조 총괄주재자, 출납책임자 등의 선거 범죄에 따른 공직후보자였던 자의 당선 효력 및 입후보 자격에 관한 소송 등제211조 총괄주재자, 출납책임자 등의 선거 범죄에 따른 공직후보자 등이었던 자의 당선무효 및 입후보 금지 소송제212조 선거인 등의 출석 및 증언의 요구제213조 쟁송의 처리제214조 쟁송의 제기와 처분의 집행제215조 결정서, 재결서의 교부 및 그 요지의 고시제216조 행정불복심사법의 준용제217조 소송의 관할제218조 선거관계소송에서의 검찰관의 입회제219조 선거관계소송에 대한 소송법규의 적용제220조 선거관계소송에 대한 통지 및 판결서 등본의 송부**제16장 벌칙**제221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22조 다수인매수 및 다수인이해유도죄제223조 공직후보자 및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23조의2 신문지, 잡지의 불법이용죄제224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경우의 몰수제224조의2 당선무효유도죄제224조의3 후보자 선정에 관한 죄제225조 선거의 자유방해죄제226조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제227조 투표의 비밀침해죄제228조 투표간섭죄제229조 선거사무관계자, 시설 등에 대한 폭행죄, 소요죄 등제230조 다수인의 선거방해죄제231조 흉기휴대죄제232조 투표소, 개표소, 선거회장 등에서의 흉기휴대죄제233조 휴대흉기의 몰수제234조 선거범죄의 선동죄제235조 허위사항의 공표죄제235조의2 신문, 잡지의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죄제235조의3 후보자 연설방송 또는 선거공보의 불법이용죄제235조의4 선거방송 등의 제한위반제235조의5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제235조의6 인사를 목적으로 하는 유료광고의 제한위반제236조 사위(詐僞)등록, 허위선언죄 등제236조의2 선거인명부의 초본 등의 열람과 관련된 명령위반 및 보고의무위반제237조 사위투표 및 투표위조, 증감죄제237조의2 대리투표 등에서의 기재의무위반제238조 입회인의 의무를 게을리한 죄제238조의2 입후보에 관한 허위선서죄제239조 사전운동, 교육자의 지위이용, 호별방문 등의 제한위반제239조의2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 등의 제한위반제240조 선거사무소, 휴게소 등의 제한위반제241조 선거사무소설치위반, 특정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의 금지위반제242조 선거사무소의 설치신고 및 표시위반제242조의2 여론조사결과의 공표의 금지위반제243조 선거운동에 관한 각종제한위반(1)제244조 선거운동에 관한 각종제한위반(2)제245조 선거일 후의 인사 행위의 제한위반제246조 선거운동에 관한 수입 및 지출의 제한위반제247조 선거비용의 법정액 위반제248조 기부의 제한위반제249조 기부의 권유, 요구 등의 제한위반제249조의2 공직후보자 등의 기부의 제한위반제249조의3 공직후보자 등의 관계회사 등의 기부의 제한위반제249조의4 공직후보자 등의 성명 등을 표시한 단체의 기부의 제한위반제249조의5 후원단체에 관한 기부 등의 제한위반제250조 징역 또는 금고 및 벌금의 병과, 중과실의 처벌제251조 당선인의 선거범죄에 따른 당선무효제251조의2 총괄주재자, 출납책임자 등의 선거범죄에 따른 공직후보자 등이었던 자의 당선무효 및 입후보 금지제251조의3 조직적 선거운동관리자 등의 선거범죄에 따른 공직후보자 등이었던 자의 당선무효 및 입후보 금지제251조의4 공무원 등의 선거범죄에 따른 당선무효제251조의5 당선무효 및 입후보 금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제252조 선거범죄에 따른 처형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정지제252조의2 추천단체의 선거운동의 규제위반제252조의3 정당,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의 정치활동의 규제위반제253조 선거인 등의 위증죄제253조의2 형사사건의 처리제254조 당선인 등의 처벌의 통지제254조의2 총괄주재자, 출납책임자 등의 처벌의 통지제255조 부재자투표의 경우의 벌칙의 적용제255조의2 재외투표의 경우의 벌칙의 적용제255조의3 국외범제255조의4 위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에 의한 선거인명부의 초본 등의 열람 등에 대한 과태료**제17장 보칙**제256조 중의원의원의 임기개시제257조 중의원의원의 임기개시제258조 지방공공단체의회 의원의 임기개시제259조 지방공공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제259조의2 지방공공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의 특례제260조 보결의원의 임기제261조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선거관리비용의 부담구분제261조의2 선거에 관한 상시계발비용의 재정조치제262조 각 선거에 미치는 선거관리비용의 재정조치제263조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 선거관리비용의 국고부담제264조 지방공공단체의회 의원 또는 장의 선거관리비용의 지방공공단체부담제264조의2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제265조 심사청구의 제한제266조 특별구의 특례제267조 지방공공단체조합의 특례제268조 재산구의 특례제269조 지정도시의 구 및 종합구에 대한 이 법의 적용제269조의2 선거에 관한 기일의 국외에서의 처리제270조 선거에 관한 신고 등의 시간제270조의2 부재자투표의 시간제270조의3 선거에 관한 신고 등의 기한제271조 도도부현의회 의원의 선거구의 특례제271조의2 일부무효에 따른 재선거의 특례제271조의3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특례제271조의4 재입후보의 경우의 특례제271조의5 재외투표가 불가능한 경우의 취급제271조의6 적용관계제272조 명령에의 위임제273조 선거사무의 위촉제274조 선거인에 관한 기록의 보호제275조 사무의 구분**부칙** |